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함으로써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관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과 사업비 규모 등을 명시(안 제25조)
 - 도로 및 하천시설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 도시공원 경관심의 포함
-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안 제26조)
- 효율적 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 수정(안 제27조)
-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30조, 안 제31조)
- 세부 규칙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22조, 제3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일(별표)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경관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과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는 「경관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제1호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조례입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제1항의 서술형태와 같이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말한다.>로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의 제2항 제4호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구체화 함.
- 안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 별표 「경관심의 건축물(안 제26조 관련)」의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를 삭제하고 경관지구로 통일한 내용으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함으로써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 개정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옥외광고정비기금”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 기금의 용도 신설 및 명칭 수정 (안 제3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도록 조례명을 정비하고, 관련 용어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신설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기금의 재원)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기금의 용도)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개정에 따라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됨. 다만 기금 사용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 1부.

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빙집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 추가(안 제16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은 60페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하는 등 분양주택 규모 제한(안 제2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등 분양대상자와 제외자 기준 규정(안 제26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 규정
(안 제27조)
-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기준 규정(안 제32조)

3. 검토의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기술 원칙’ 준수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등에 따라>로 수정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법 제1조 중 목적문안을 전수하여 “안산시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를 추가 기술하여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입법의 ‘일치성 원칙’ 준수를 위하여 조례 제명과 일치하도록 후단 문안 정리하여,
-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등에 따라 안산시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같이 수정 검토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입법자문 결과 전체적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문안을 개별 상위법 조문의 정의와 목적으로 수정하는 의견과 일부 조문을 통합 제정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체 조례·규칙 심의 및 입법자문 결과 반영된 사안으로 제정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빈집, 소규모 주택 재정비 대상을 정확히 분류하여 제정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과, 기 재정·운영 중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의 심도 있는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등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 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기정액이 479,800천원 대비 25% 증가한 599,800천원으로 계획 변경됨.

3. 변경사유

-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광고문화를 확립하고자 전자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설치를 위해 2018년 제2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반영함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함.

- 세부사업내용 : 120,000천원
 - 전자게시대 신규설치 : 90,000천원
 -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ACS)설치 : 30,000천원

4.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가)	2018년 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마)=(가)+(라)
	수입(나)	지출(다)	증감 (라)=(나)-(다)	
기정(A)	1,284,144	496,565	479,800	16,765
변경(B)	1,284,144	646,565	599,800	46,765
증감((B-A))	-	150,000	120,000	30,000
				30,000

5. 기대효과

- 전자계시대 설치로 효율적인 시정홍보
-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시스템 설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광고문화 확립

6. 검토의견

-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광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자계시대 설치(90백만원) 및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설치(30백만원) 비용을 2018년 제2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사업추진시 전자계시대 설치 장소는 홍보효과가 높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참고자료

- 근거법령 및 관련자료 1부.